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03
------------	------

발의연월일 : 2017. 1. 6.

발의자 : 장병완 · 주승용 · 전혜숙
유동수 · 김경진 · 이동섭
박준영 · 정인화 · 박지원
김수민 · 김동철 · 박주선
송기석 · 이찬열 · 신용현
노옹래 · 이상돈 · 이태규
윤호중 · 천정배 · 윤영일
이개호 · 인재근 · 이채익
홍의락 · 최경환(국) · 김민기
김종로 · 백재현 · 조배숙
권은희 · 손금주 의원
(32인)

제안이유

에너지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석유, 석탄, 가스 등에 의한 화석에너지에 대체하여 청정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간 융복합화 등으로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미비되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며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둠(안 제12조).

마.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지원,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에너지특화기업등의 지정 및 세제·자금의 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지원 등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에너지산업: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나.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으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4. “에너지특화기업등”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과 연구기관(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에너지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에너지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클러스터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클러스터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

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효과) ① 에너지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이미 구축된 연구·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을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성계획의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과 조성 효과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 에너지특화기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원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 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를 둔다.

1.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성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특화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민간위원: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 민간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역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요청과 조성계획의 작성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4. 관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에너지특화기업등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중에서 에너지특화기업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등의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등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및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

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너지특화기업등과 전문연구기관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시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등과 전문연구기관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지역협의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